



vol.1988

- 이주의 초점 |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비준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 반영
- 관세 동향 | RCEP 활용해 폭넓게 혜택받으세요
- 법령 정보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 요령」 제정

Contents

04

이주의 초점

-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비준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 반영

06

관세동향

- RCEP 활용해 폭넓게 혜택받으세요

07

수출입동향

- 역내 최대 경제블록, IPEF 본격 시동
- 뉴질랜드,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 조사
- 韓·美, 반도체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 합의
- 中, 질적 성장 정책 지속 ... 韓 기업의 진출 전략 재점검 필요
- 산업부, '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해제 공식 확인
- 식약처, 식품업계와 식품원료 수급 대응방안 논의
- 기표원, 美와 AI·IoT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 APEC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 개최
- 무협, '무역구제제도 개선'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17

물류동향

- BPA, 부산항-유럽 복합운송 활성화로 다양한 운송 대안 모색



18

관세행정실무해설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4)

질의응답사례

- 양압기 수입요건

31

판례동향

조세심판결정례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38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 제9007호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세번 바로잡기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상식 밖의 상품학

- 어린이 바닥 매트 자주 교체 해야

51

최신개정법령

고시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 요령」 제정

공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훈령

-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59

게시판

단신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비준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 반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캄보디아産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와 탄력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법령 보완이 이뤄진다.

또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 변경된 사항도 반영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일부 사항도 보완·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및 기존 체결된 FTA 변경 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체결 FTA 주요사항, 국내법령에 반영

지난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을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産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약 1만 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며,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FTA의 세부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既往체결 FTA 변경사항도 반영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체결된 FTA에서 변경된 사항도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먼저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한·중 FTA 부속서 3-다)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또한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양국은 이스라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바 양국간 논의를 거친 원산지증명서 서식(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3)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어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올 3월 확정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참고로 RCEP에는 ‘ASEAN+5’ FTA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며, 뉴질랜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이다.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이며,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가 원칙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대상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대상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추가해 이러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일부 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시행규칙상 해당 부분을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정정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FTA 반영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하세은 기자 |

RCEP 활용해 폭넓게 혜택받으세요

관세청, FTA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6월 8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 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다.

활용 지원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및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집행지침 마련으로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란 최초의 원산지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으로, 국내에서 미판매되거나 물류

창고에 일시 보관된 역내산 수입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시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특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어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이다.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RCEP의 자율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율증명 권고서식을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RECP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을 확대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RCEP 대상 255개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을 확대했다.

설명회는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역내 최대 경제블록, IPEF 본격 시동

우리 산업의 공급망과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기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일본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5월 23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어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해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가졌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태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등 RCEP, 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정부는 우리가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IPEF에서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 간, 기업 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돼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상회의를 통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태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부 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달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 IPEF 참여국 장관회의를 마무리했다. | 하구현 기자 |

뉴질랜드,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 조사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반덤핑관세 2.5~12.6% 부과

뉴질랜드정부가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조사를 한 결과 반덤핑관세 2.5~12.6%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뉴질랜드 국내 수입자 영향도를 감안해 최초 6개월은 반덤핑 조치가 유예된다.

KOTRA에 따르면, 뉴질랜드정부는 현지 반덤핑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6월 무역구제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및 대만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대만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은 미소마진으로 조사대상에 제외됐으며, 올 4월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産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관련 제품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돼왔다.

해당 품목은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주요 제품으로 HS Code는 제7225.99호, 제7210.61호, 제7210.69호, 제7226.99호 등이다.

뉴질랜드정부에 따르면, 제7225.99호와 제7210.69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제7210.61호의 경우 전년대비 3.8% 감소세를 보였다.

해당 품목에 대한 뉴질랜드의 전 세계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미화 4,232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産 제품이 3,991만 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정부는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내 수입자의 영향도를 감안해 최초 6개월간은 반덤핑 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는 “현지에 제조기업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외국産 수입제품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제소와 그에 따른 조사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복숭아, 감자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철강 관련 제품은 최근 5년 사이 무역구제와 관련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제품의 수출기업은 정부의 규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하세은 기자 |

● 뉴질랜드 정부 반덤핑 산정률 ●

업체명	반덤핑률
동국제강(주)	2.5%
KG 동부제철	12.6%
그 외	2.5%

韓·美, 반도체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 합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韓·美 상무장관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계기로 함께 방한한 美 상무부 지나 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함께 '공급망·산업 대화' MOU를 체결하고 동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명실상부한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5월 21일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韓·美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망·산업 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연 1회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를 개최해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해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우리 기업들의 對美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올해는 韓·美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FTA 발효 전후 10년 비교 시 한국의 對美 투자는 3배, 미국의 對韓 투자는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상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양국 투자유치 기관간(韓 KOTRA IK, 美 Select USA)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産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제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韓·美 상무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디지털 분야 16개 주요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했다.

이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해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하구현 기자 |

中, 질적 성장 정책 지속 韓 기업의 진출 전략 재점검 필요

대내외 환경 변화가 오히려 中의 질적 성장 필요성 부각

최근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며 중국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정책을 양적 성장 전략에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 현상으로, 앞으로도 질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 23일 발표한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투자·수출주도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2010년대부터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불가피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對美 무역분쟁,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예상치 못한 대내외 악재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과정이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은 질적 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감내하면서까지 질적 성장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對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정책기조에 맞춘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맞춤형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을 소개하면서 빠른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기술 향상, 자원 개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진출 및 중국 혁신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으로 ▲스타트업 협력 진출, ▲도·시·군 특성별 맞춤 진출, ▲소비시장 공략 세분화 등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질적 성장 정책 중에서도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은 불균형 문제와 소비주도 성장의 핵심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안병선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기조는 성장전략의 전환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우리 기업들도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승훈 기자 |

산업부, '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및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 '제8차 한·유럽연합(EU) 무역구제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상호 수입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현재 우리의 對EU 수입규제는 총 4건(5월 19일 기준)이며,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먼저 우리 측은 EU의 철강 긴급 수입 제한이 한·EU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U는 2018년 7월부터 26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 6월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對EU 투자 및 생산 계획에 차질

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긴급 수입 제한에 대한 재고 및 우리 측 관심품목의 배당량 증량을 요청했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유럽연합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이어 양측은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그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하세은 기자 |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해제 공식 확인

인니 대통령 “23일부터 수출 재개” 직접 발표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가 5월 23일부터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5월 19일 화상연설을 통해 자국 내 식용유 가격 및 수급 상황, 1,700만 명에 달하는 팜유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팜유업자들이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해 내수시장 식용유값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팜유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 도입, 보조금 지급 등 식용유 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증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국제 시장 식용유 값에 기름을 부어 공포심리로 인한 사재기를 부추겨 최근 국내에서는 식용유 구매 개수 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에 이어 식용유 대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우려해 우리 식품업계의 식용유 수급현황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월간 식용유 수요는 19만 4,000톤으로 자국 내 공급량이 수출금지 이전인 3월 6만 4,500톤까지 하락했으나 수출금지 조치 이후 월간 수요를 상회하는 21만

1,000톤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한편 시장가격도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의 식용유 가격이 3월에 리터당 1만 9,800루피아(약 1,723원)였으나, 수출금지 조치 이후 1만 7,200~1만 7,600루피아(약 1,496~1,549원) 수준까지 하락해 수출금지 해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금지 해제 배경은 ▲식용유 수급 개선 및 가격 하락, ▲최근 전국적인 오일팜 농민 시위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이익 감소 등 세 가지로 판단된다.

약 3주간 지속된 팜유 수출금지 조치로 인도네시아 수출이익 감소가 약 6조 루피아(약 6억 7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파악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은 당초 수출금지 조치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재개 조치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며, 팜유 수출금지 조치가 재차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재개 조치가 향후 국내 식용유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정책이 여러 차례 변화하고 있는 바 주재국 공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식약처, 식품업계와 식품원료 수급 대응방안 논의

표시제도 탄력적 적용 및 신속한 통관 등 지원

최근 각국이 식품원료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인도의 경우 밀 수출을 금지했고, 세르비아는 밀, 옥수수, 밀가루 수출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비료, 식용유 등의 수출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식품업계에 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신속한 통관, ▲표시제도 탄력적 적용, ▲유통단계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식품원료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와 5월 19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식품원료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팜유 등 식용유 지류, 밀, 탄산(CO₂), 옥수수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원료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업계에서는 현재 재고관리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국제 정세나 기후 영향

(가뭄 등)으로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식약처는 향후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원료의 경우 수급 불안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원료의 수입공급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통관단계에서 식품원료에 대한 수입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물가조절이나 수급용 원료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등을 활용해 업체에서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표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원료 수급이 불안해 대체 원료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되 변경된 표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식품 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 표시 변경작업으로 인한 생산·유통 차질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료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저가·불량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하세은 기자 |

기표원, 美와 AI·IoT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기표원, 美 소비자제품위원회와 제품안전 실무 양자회의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1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실무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기관으로 소비자제품안전법을 근거로 1972년 설립됐으며 ▲제품안전 정책수립, ▲안전기준 관리, ▲시장감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총괄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이다.

2016년 이케아 서랍장 전복사고 발생 당시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사고조사, 리콜, 안전기준 개정 등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총괄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2012년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책 교류를 지속했으며, ‘제품 리콜 심포지엄’,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 신기술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사고 대처 및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사례 공유 등 실무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양자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 등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관리, 기능 안전성 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 기전자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의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스템 고장, 상황 오인, 보완공격, 날씨·전자파를 비롯한 주변환경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또한 융복합제품 출시 정보와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실무자급 양자회의를 정례화하고, 제품시장조사 및 자발적 리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韓·美 간 제품안전 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기표원장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세계 각국에서 출시되고 있어 제품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韓·美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주요 국가와의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하세은 기자 |

APEC 통상장관회의의 3년 만에 대면 개최

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 공급망·디지털·환경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월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의 [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美, 日, 中, 러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다자 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계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新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안성일 실장은 또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우선 美 주도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듣고 향후 IPEF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新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실장은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기존 CPTPP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美, 日,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우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해당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에서 對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이번 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이승훈 기자 |

무협, ‘무역구제제도 개선’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韓 수입규제를 우회하는 외국産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한국무역협회가 5월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해당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産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 역시 2002년 이후 행해진 적이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세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횟수가 연평균 20건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EU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규제를 시행해 왔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 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

상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회덤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건의 우회덤핑 조사가 수행됐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에서는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익대 강준하 교수는 “규정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며,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 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승훈 기자 |

BPA, 부산항-유럽 복합운송 활성화로 다양한 운송 대안 모색

중국 지방 정부와 해상-철도 복합운송 활성화 위한 회의 개최

부산항만공사(BPA)는 18일 중국 허난성 지방 정부를 비롯한 중국 유럽 국제화물열차 관계 당국과 '부산항-중국-유럽'을 연결하는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PA 이날 회의에는 마케팅부와 주한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 허난성 인민 정부, 정저우시 산하 내륙항그룹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 운송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항 이용 선사 대상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열차 컨테이너 수송량은 연간 400만 TEU 달하며, 최근 5년간 화물열차 운행 편수 증가율은 50%를 넘었다.

특히 정저우시는 명실상부한 중국 내 철도 거점 도시로 2013년 시 산하 내륙항그룹(ZIH)을 출범한 이래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동남아 각지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대륙간국제화물열차(TCR)는 1990년대 초반 개통됐으나 지금과 같은 국제 화물열차로서의 기능은 2010년대 초반 정저우시와 동유럽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2022년 현재 시안, 청두, 우한, 충칭, 이우 등 중국 내륙 교통 거점들과 연계한 노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상운임이 폭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해상 노선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TSR, TCR 등 국제화물열차를 통한 유라시아 지역의 운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열차는 중국 생 산품 위주의 벌크화물 위주로 운송량이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중국 내 복합운송 거점 도시들이 부산항을 비롯한 인근 주요 거점 항만들과의 협업을 통한 컨테이너 위주의 국제 복합운송 물동량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 이용 선사와 물류기업들에 더 다양한 운송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산항-유럽 간 복합운송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¹⁾ 제도(4)

관세청 | 심사국 심사정책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전 세계 세관당국들이 운영하는 제도로, AEO 기업에게는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SAFE Framework 채택에 동의하고,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AEO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한권으로 끝내는 AEO 공인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AEO 공인신청 길라잡이는 ▲AEO 제도와 공인기준, ▲법규준수 공인기준의 이해,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이해,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의 이해,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이해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 수출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은 위험평가 공인기준과 통제활동 공인기준 등이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통권 제1987호, 2022.5.23. 발간)에 이어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이해’ 중 통제활동 공인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Ⅲ.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이해

i.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개요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중소 수출업체는 다음의 위험관리, 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이론과 모델을 참고해 각자의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관세청 심사정책과, <한권으로 끝내는 AEO 공인신청 길라잡이(2021.8.)> 발책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이론과 모델을 이해해 수출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출활동과 관련된 구조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길 기대한다.

① COSO 모델	⑤ 유럽의 COMPACT 모델과 AEO 가이드라인
②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⑥ WCO 위험지표와 표준위험관리
③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	⑦ ISO, TAPA, OHSAS의 위험성 평가
④ 미국의 FA, ISA 등 업체심사제도	

ii. 통제활동 공인기준별 해설 및 사례

1. 가이드라인 2.2.1.1

2.2.1 (2.2.1.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해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문서화 + 실행)	① 담당자 부재 시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와 관련된 절차서(세관신고·구매·제조·보관·운송·적재·회계 등)가 있습니까? ② 웹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절차서(매뉴얼 등)를 수출입관리책임자 등 관련 업무 직원 간 공유하고 있습니까?

1) 점검 항목

① 문서화

- 업무 대행자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절차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

② 실행

- 업무절차서를 관련 업무직원간 공유하고 있는 내역 점검

2) 제출방법

① 문서화

○ 대행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서 제출

- 문서화 형식적 요건 충족

- 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 절차

가. 절차서 상 수출입 관련 업무의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일련의 업무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나. 법령에 근거해 수행하는 업무는 업무수행자가 절차를 바탕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해야 함.
- 다. 절차서상 수행해야 하는 단위 업무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라. 절차서상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벌칙조항 등이 포함돼야 함.
- 마. 절차서상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통제활동이 포함돼야 함.

② 실행

- 업무절차서를 관련 업무직원간 공유하고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직원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종이문서 비치, 그룹웨어 공유, 네트워크 폴더 등)로 공유하고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가이드라인 2.2.1.1(예시) ●



1. AEO관련 규정 및 수출입업무매뉴얼 공유현황



3) 주요 보완 사례

① 문서화

○ ERP, Groupware 등 개발업체가 제공한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제출한 경우

- 수출입 관련 업무 처리 방법과 관련된 사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각 업무단계별 관련 법령 등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불인정함.

○ 사업장별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업무절차서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 사업장별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해 제3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 매뉴얼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인정함.

○ 거래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거래업체가 동사의 수출입업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또는 자사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인정함.

② 실행

- 시스템 계정을 부여받지 못한 현장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매뉴얼이 공용서버, 시스템 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경우

-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을 현황 설명했으나, 매뉴얼 조회 빈도가 저조한 경우(조회 0건 등)

2. 가이드라인 2.2.2.1

2.2.2 (2.2.2.1)	수출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문서화 + 실행)	①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가격·수량·거래업체·구매경로 등 관련 정보를 추적·확인할 수 있습니까? ③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전산 시스템 또는 관리대장)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1) 점검 항목

① 문서화

- 물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이 절차서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

② 실행

- 수출입물품의 관리를 위해 국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추적·확인하고 있는 현황 점검
- 수출입물품의 관리를 위해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를 추적하는 현황 점검

2) 제출방법

① 문서화

○ 물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절차서 제출

- 문서화 형식적 요건 충족
- 구매한 물품의 가격, 수량, 거래업체, 구매경로 등 관련 정보를 관리대장이나 ERP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
- 수출물품의 오더정보, 통관정보(C/I, P/L, B/L 등), 대금의 지급 및 영수와 관련된 정보, 입출고 정보, 소요량 등 관련 정보를 관리대장이나 ERP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

② 실행

- 수출입물품의 관리를 위해 국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추적·확인하고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한 물품의 가격, 수량, 거래업체, 구매경로[판매자에 대한 정보(업체명, 국가, 내/외자 구분 등)]등 관련 정보를 관리현황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수출입물품의 관리를 위해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를 추적하는 증빙자료 제출

- 대금의 지급, 영수 내역과 그 원인이 되는 특정 수출입 건을 대조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가이드라인 2.2.2.1(예시)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품명	상세	구매자상호	구매자부호	품목	수량	단위	단가(Out)	합계(Out)	수출신고일자	선적일자
2									50	EA				
3									10	EA				
4									10	EA				
5		2020-02-10	2020-02-10					일본	20	EA				2020-02-
6									5	EA				
7									150	EA				
8									1	EA				
9		2020-04-17	2020-04-17					일본	3	SET				2020-04-
10									1	EA				
11		2020-05-11	2020-05-11					미국	1	SET				2020-05-
12									1	SET				
13									1	SET				
14									50	EA				
15									10	EA				
16		2020-05-12	2020-05-12					일본	1	EA				2020-05-
17									1	EA				
18									15	EA				
19									1	EA				
20		2020-05-18	2020-05-18					미국	1	EA				2020-05-
21		2020-05-20	2020-05-20					인도	1	SET				2020-05-
22									3	EA				
23		2020-06-10	2020-06-10					일본	2	EA				2020-06-
24									2	EA				
25									1	EA				

3) 주요 보완 사례

- 물품의 이력을 추적하는 현황 설명만 제출하고 실제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물품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기업의 현황과 상이할 경우
- 기업은 ERP를 사용하고 있으나,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는 등의 경우

3. 가이드라인 2.2.2.2

2.2.2 (2.2.2.2)	수출업체는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문서화 + 실행)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전산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세관직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1) 점검 항목

-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전산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세관직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현황 점검

2) 제출방법

-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전산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세관직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현황 설명 제출
-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장심사 항목으로 서류심사는 현황 설명만 제출
- 현장심사 시 세관직원의 시스템 접근 허용 현황 점검
- 세관직원의 시스템 접근 요청 시 계정 및 권한 부여 절차 점검

3) 주요 보완 사례

- 특별한 사유 없이 세관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세관직원에게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허용한다는 현황 설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가이드라인 2.3.1.1

2.3.1 (2.3.1.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문서화 +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까? ③ 정리기준을 설정해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 관련 자료를 세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④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1) 점검 항목

① 문서화

○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내용이 절차서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

② 실행

- 수출입물품의 이동, 대금의 지급·영수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보관하고 있는 현황 점검
- 수출입 관련 자료를 세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현황 점검
- 자료보관구역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현황 점검

2) 제출방법

① 문서화

-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절차서 제출
 - 문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절차

● 보관대상 자료 ●

수출입물품 관련 자료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내역, 보세운송신고서 등
물품대금 관련 자료	물품매도화약서, 상업서신철, 구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가격자료, 구매품의서, 기술도입계약서, 로열티·수수료 등 무역외지급내역서, 운임지급명세서, 외환송금영수증 등
환급 관련 자료	소요량계산 근거 서류 및 계산내역에 관한 서류, 내국신용장 등 수출용 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 수출사실 확인 서류,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고서류의 보존연한(「관세법 시행령」 제3조) ●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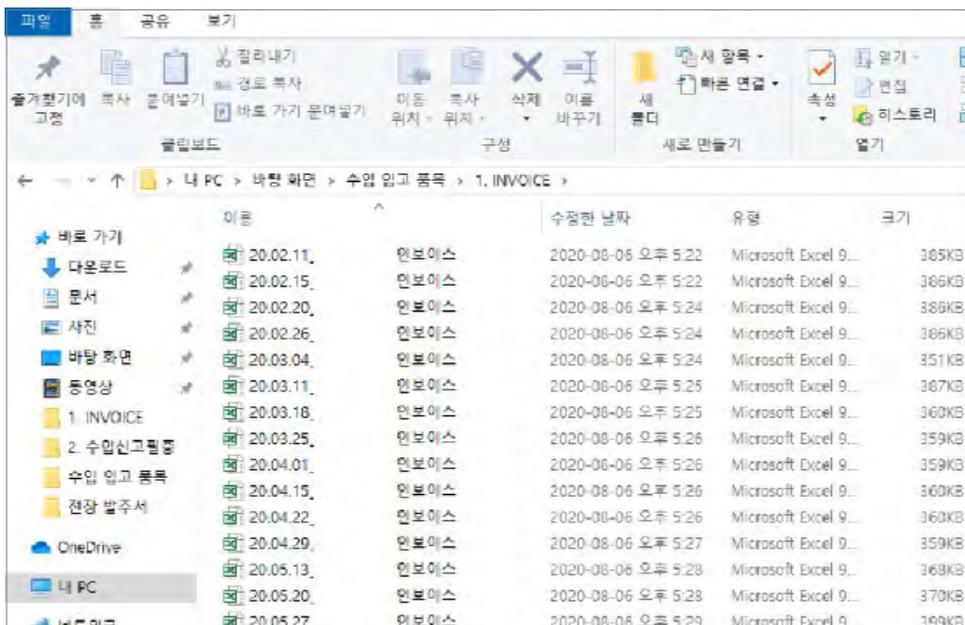
- 가. 수출신고필증
 - 나. 반송신고필증
 -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정리기준을 설정해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 관련 자료를 세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는 절차
 - * 보관대상자료의 정리기준과 보관형태를 규정하고 있어야 적절함.
- 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제한 절차
 - * 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적절함.

②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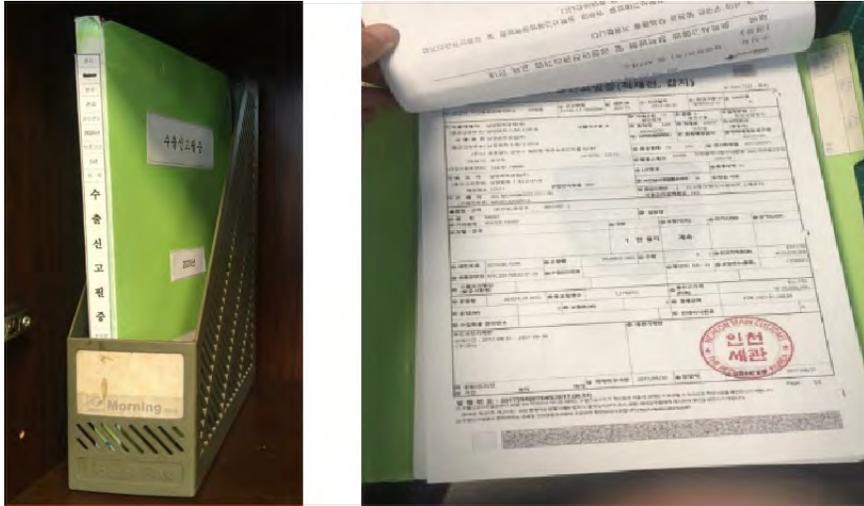
- 수출입물품의 이동(계약·통관·운송 등)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현황 제출
- 전자문서로 보관 하는 경우 : 시스템 캡처자료 제출

● 전자문서 보관(예시) ●



- 전자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사진자료 제출

● 전자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예시) ●



○ 정리 기준을 설정하고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 관련 자료에 대해 세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현황 제출

● 전자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예시) ●



●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

* 구매팀 > 수입 > 수입선적서류 > 연도별 > 월별 폴더
 → 월별로 구분된 폴더 안에 일별로 수입진행된 BILL OF LAN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FREIGHT INVOICE, 용도설명서, 사유서 순으로 보관.
 *관세법 상 수입신고 서류 보관기간 5년으로, 5년간 전산 보관

- 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제한 현황 제출
- 보관장소 관리담당자 지정, 통제구역 설정, 접근통제장치 설치

● 접근통제장치 불출대장(예시) ●

연번	종류	성명	사유	불출 시각	반납 시각	담당자 확인

- 3) 주요 보완 사례
- 보관대상 문서의 정리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제공

수입

양압기 수입요건

양압기와 부속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입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돼야 합니다.

양압기는 HS Code 제9019.20-8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법」)]

-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 의료용 산소천막
 - 수동식 국소의료용 산소소매
 - 전동식 의료용 산소천막
 - 전동식 국소의료용 산소소매

- 의료용 습도조절기
 - 외음압호흡보조장치
 - 왕복식 호흡 보조기
 - 의료용 가스공급장치
 - 의료용 산소혼합공급기
 - 산화질소 전달장치
 - 양압지속유지기
 - 수동식 심장펌프 인공소생기
 - 호흡기용 마스크
 - 에어로졸 마스크
 - 부분재 호흡마스크
 - 비재호흡마스크
 - 가스혼합마스크
 - 구급소생마스크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통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압기 호스 및 소모품은 HS Code 제9019.2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없지만, 의료기기로 개인통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증류기의 품목분류

증류기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A 관세율표 제8419호에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 8419.40호에는 ‘증류기나 정류기’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 “(A) 간단한 증류장치,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나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와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예 :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simple batch still)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증류기 본체는 액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보통 증기튜브나 코일에 의하여 가열된다. 연속적 증류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증류기가 직접으로나

증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가열되는 동안에 다른 증류기는 증류액을 공급하고 앞의 증류기로부터의 증류증기에 의하여 가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상기 설명한 증류기에 해당한다면 제8419.4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게임용 전자기기 공동 구매 문의

해외에서 판매하는 게임용 유선 전자기기를 공동구매하려는데, 같은 물건을 2개 이상 구입하는 경우 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품 총 가격이 1,000유로 이상인 경우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 제작은 벨라루스고, 판매는 리투아니아인데 통관 여부와 한·EU FTA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의한 물품은 HS Code 제9504.50호 또는 제 9504.90-90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제 9504.50-1000호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9504.50-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이라면 1개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수입승인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제9504.50호)의 예상 세액은 관세 0%(WTO협정관세),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개별 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리투아니아는 한·EU FTA 체결국으로 리투아니아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물품의 원산지가 리투아니아여야 합니다.

이에 벨라루스産 물품은 WTO 협정관세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제재에 대한 별도 지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반도체 부품 관세율 문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FPGA를 공부용으로 사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의한 물품은 HS Code 제8543.7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품목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관세 0%(주로 어린이 용으로 제작된 휴대폰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일 경우)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RCEP C/O상 HS Code 기재 관련

올해 HS가 개정돼 제3402.13호가 제3402.42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C/O에 HS Code가 변경 전인 제3402.13호로 돼 있는데 이 경우 개정 후 HS Code로 수정해야 하나요?

A RCEP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는 2012 버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항은 통관지 세관 및 해당 부서(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22)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관세법」에서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출 등' 사실 확인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선박 출항 당시 세관장이 잔존유량(또는 쟁점 검정서)을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선용품에 대한 적재확인서의 사후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번호 : 조심2022관0027(2022.5.4.)
- 청구법인 :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6. 외국무역선(선명 : ○○○,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 144조에 따라 내항선으로 자격을 전환하면서, 수입신고번호 ○○○으로 쟁점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BUNKER-C 등 잔존유류 ○○○리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 선박은 2021.8.26. 「관세법」 제144조에 따른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자격 전

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4.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번호 ○○○호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환급 고시」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이하 '쟁점 적재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 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이 아니라 적재확인 대상이고, 쟁점 선박 출항 전에 적재확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적재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적재허가는 당초 선박에 적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미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는 논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전환하는 선박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외하고는 법규상 적재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도 수출 등의 사실 확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재(공급)에 대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세환급 고시」 중 이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확인 절차 규정만이 유효하고 적절하므로 쟁점 선박에 이미 적재되어 있던 쟁점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이 아니라 적재확인 대상이다.

「관세환급 고시」 제68조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확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규상으로도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를 세관직원의 검사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가장 엄격한 적재확인 방식인 국가공인검정기관(Korea Surveyors and Adjusters Co., Ltd., 이하 ‘쟁점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검정서(검정서 번호 : ○○○, 이하 ‘쟁점 검정서’라 한다)에 의해 적재확인이 되었으므로 세관직원이 검사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환급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적재허가와 적재확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나, 외국무역선에 내륙의 선용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① 적재허가 → ② 적재 → ③ 적재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물품과 같이 자격전환으로 선박에 이미 적재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적재확인 1개의 절차로 완료되므로 적재허가가 필요 없는 쟁점물품은 적재사실만 확인되면 적재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은 관세환급 신청 전까지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항 전 적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쟁점물품의 수량 확인이 불가하여 출항 후에 쟁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2021.8.26. 수입신고되었고, 같은 날인 2021.8.26. 쟁점 선박이 출

항하였으므로 수입신고 수량과 적재 수량이 동일한 것이 명확하며, 쟁점 검정서에 의해서 적재 수량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수량 확인 불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출항 전 적재확인 등 절차는 실제 관세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쟁점물품은 ①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②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되며, ③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에 해당되어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의 실질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사후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은 물품을 공급할 때부터 환급을 신청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의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선박 출항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 고시」 제61조 제3항 및 제71조 제1항에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보세판매장·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이하 보세구역 반입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선용품 적재확인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에서 'MCP 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을 시달하여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

준 사례가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에 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08관49, 2008.8.28.)도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사후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선용품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적재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보세공장 등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논거는 반입사실 확인이 가능함에 있는바, 쟁점물품도 수입신고일 당일 출항하였고 쟁점 검정서에 의해 적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수출신고 정정을 승인하도록, 증가한 수량에 대해서는 사후 수출신고 수리를 인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출항 후에 적재확인서도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에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적재확인서 교부 신청은 총대리점인 ○○ ○(이하 'AAA'라 한다)가 대행하였고, AAA는 이를 다시 현지 지역대리점인 BBB 주식회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법적책임을 지는 AAA는 자본금이 ○○○원에 불과한 영세기업으로 주로 내항선 업무를 대행하고, 국제무역선 업무는 드물게(연 2~3회) 대행하므로 관련 업무처리에 익숙하지 못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약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여 기업의 존폐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당시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세액의 86%를 국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국세의 환급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한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대상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이 아니고 적재확인 대상이며, 선용품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중 적재확인 절차 규정만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하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 고시」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적재허가 및 신청과 관련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고시 제66조에서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는 선용품에 대해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적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2항에서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전환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 또한 적재허가의 대상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에서 적재확인 및 적재확인서 교부는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재확인은 적재허가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며, 양자는 분리된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한바, 쟁점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절차 위반으로 출항 당시 쟁점 선박에 남아있던 잔존유류의 수량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쟁점 선박이 출항한 후에 신청한 쟁점 적재확인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검정기관이 발행한 쟁점 검정서가 세관직원의 검사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고, 쟁점물품은 법규상 적재확인이 된 환급대상 수출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는 「관세환급 고시」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검정서는 세관장의 적재확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2) 적재확인은 선박 출항 전에 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은 최장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까지 가능하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은 선박 출항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은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전환을 할 때 세관장이 해당 선박의 잔존유류 양을 확인하는 등 적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선박이 출항한 후 환급신청을 할 때 적재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인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들어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사후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세환급 고시」에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및 반복공급물품 등에 대하여 사후 발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와 달리 선용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적재확인서의 사후 발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세청에서도 일관되게 선용품에 대한 적재확인서의 사후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관49, 2008.8.28.)는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자격 전환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적재된 환급대상 유류를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있어 물품 공급시점에 세관장의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을 인정함으로써, 세관장의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을 받은 바 없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 외 AAA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 적재확인서 발급신청 기각으로 인해 침해되는 직접적인 사익은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한정되고, 청구 외 AAA의 경제적 피해는 청구법인과 AAA와의 대형 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인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AAA에 발생한 민사상 손해까지 확장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재확인서 교부신청 거부처분이 의도하는 공익은 적법 절차 준수에 따른 관세환급의 적정성 유지인데, 이러한 공익이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익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낮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형식이나 외관이 실질과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인데, 이러한 과세에 대한 원칙을 이 건

과 같이 관세 등 환급을 위한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이러한 특혜규정은 정해진 법령 절차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0. 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 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67조 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

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 선박은 ○○○ ○○○에 입항하여 ○○○ 10:20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과 함께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고, 운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쟁점 검정기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검정을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캐나다로 출항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 쟁점 검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 검정서상 검정일시는 ○○○ 13: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유류의 검정량(○○○리터)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적재확인을 요구하였는데, 쟁점 적재확인서 우측 상단에 ‘익일 오후 12시까지 완료보고 요함(보고기간 이내에 선박 출항 시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재허가일자는 2021.11.4.로,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품명 및 규격 란 등에는 각 쟁점물품별 수량과 근거서류로 쟁점 검정서 번호 및 수입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1.5. 쟁점 선박이 2021.8.26. 출항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이미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선용품에 대해서는 적재확인 절차만이 유효하고, 관련 법령상 적재확인은 관세환급 신청 전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검정서로 쟁점 선박 수출 당시에 쟁점물품이 적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에서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출등’ 사실 확인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 환급 고시는 선용품에 대하여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는 과세유류와 국내 운항 중 공급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환급 고시」에서 일부 보세공장 등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선용품에 대한 적재확인서는 사후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세청장도 법령해석을 통해 일관되게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선박 출항 당시 세관장이 잔존유량(또는 쟁점검정서)을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9007호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명섭 | 인천세관 심사정보과장

[해설 요지]

제9007호는 크게 (I) '영화용 촬영기' 그룹과 (II) '영사기'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I) 그룹은 다시 (A) 영상만을 고속으로 촬영하는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와 (B) 영상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영화용 촬영기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물품은 음성의 녹음용이나 재생용기기(제8519호)와 텔레비전 영상과 음성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21호),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 프로젝터(제8528호) 등 디지털 기기와 반도체 저장매체의 발달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I) 그룹의 (A)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 소그룹은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나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진만을 촬영한다는 면에서 (B) 소그룹의 영상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영화용 촬영기와 구별이 된다.

(II)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 그룹은 영화용 촬영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출하는 영사용의 정지형이나 휴대형의 기기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영사기는 촬영된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필름에 담겨진 영상과 음성을 인출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갖고 있다.

소호 체계는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소그룹을 중심으로 각각 5단위에 특정 소호로 세분화했으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6단위 소호로 각각 세분화한 총 4개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다.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 기기는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나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제8428호에 분류되는 ‘기계식의 조정가능한 바퀴달린 플랫폼’과 결합해 제시되는 경우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다기능기계 또는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 분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 제9007호(또는 제8525호)와 제842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를 장착한 ‘영화나 텔레비전 촬영용의 플랫폼과 조절용 암[돌리(dolly)]를 갖춘 차량(트럭)’도 잠정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제9007호(또는 제8525호)와 제8705호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영구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기의 경우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705호로 분류해야 한다.

* 참고로 디지털카메라 또는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장착된 촬영용 드론의 경우 제8806호(무인기)에 분류한다. 이 경우도 잠정적인 성격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 해당 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영구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806호(무인기)로 분류한다.

제9007호의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와 제8528호의 프로젝터(projector)의 구분 기준은 두 기기 모두 투영(projector)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제9007호의 영사기는 필름상의 영상을 광학장치 등을 통해 투영하며, 제8528호의 프로젝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 형태의 전기적신호로 저장된 영상을 광학장치 등을 통해 투영한다. 또한 제9008호에 규정된 ‘영화용을 제외한 투영기(image projector)’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말한다.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광학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는 영상과 음성을 광학적으로 필름에 저장하고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영상과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 형태로 반도체 저장매체 등에 저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9007호에 분류되는 주요 부분품과 부속품은 ‘촬영기 몸체(body), 주름통(bellow), 볼식 마운팅 헤드나 소켓식 마운팅 헤드, 셔터와 조리개, 셔터 릴리즈, 건판용 매거진이나 필름용의 매거진, 렌즈 후드, 사진기가 부착된 특수 스탠드나 받침대, 모터의 잡음 제거용 케이싱[소음차단기(blimp)], 휴대용 영사기의 케이스로서 영사용 스탠드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 다층 필름회전 스피들기’ 등이 있다.

‘영화용 촬영기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이나 ‘영화용 촬영기를 간단한 부착물(attachment)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은 제9011호의 용어에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광학현미경과 마이크로 영사용 광학현미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호의 용어)에 따라 제9011호로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고정돼 제시됐거나 분리된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은 기능단위기계 규정(제90류 주 제3호)

이나 통칙 제2호(미조립)를 적용해 제9011호로 분류한다. 다만 마이크로 영화용 촬영기나 마이크로 영사기만 별도로 제시된 것은 당연히 제90류 주 제2호(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규정) 가목에 따라 제9007호로 분류된다.

영화용 촬영기 또는 영사기와 같이 제시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는 통칙 제3호 나목과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07.10 소호(촬영기)나 제9007.20 소호(영사기)에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9007호에서 규정한 부속품임이 명백할지라도 제9620호로 분류한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9007호는 크게 (I) '영화용 촬영기' 그룹과 (II) '영사기'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I) 그룹은 다시 (A) 영상만을 고속으로 촬영하는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 소그룹과 (B) 영상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영화용 촬영기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이들 물품은 음성의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19호)와 텔레비전 영상과 음성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21호),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 프로젝터(제8528호) 등 디지털 기기와 반도체 저장매체의 발달로 인해 제9006호(광학식 사진기)의 기기와 더불어 시장에서 급속이 사라지고 있다.

(I) 그룹의 (A)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 소그룹의 기기는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나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진만을 촬영한다는 면에서 (B) 소그룹의 영상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영화용 촬영기와 구별이 된다.

(II)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의 그룹은 '영화용 촬영기'를 통해 녹음된 영상과 음성을 영사하는 정지형이나 휴대형의 기기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영사기는 촬영된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필름에 담겨진 영상과 음성을 인출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갖고 있다. 그 외 영사기는 필름을 되감는 장치와 팬(fan)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광원의 열을 줄이기 위해 냉각수에 의한 냉각기기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그룹에는 특수형(항공기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항공사진 촬영기, 잠수사진 촬영기, 컬러용·입체사진용(stereoscopic)·파노라마식 촬영기)도 포함하며 산업용이든 아마추어용인지에 관계없다. 영사기는 영상과 함께 기록된 음성을 재생하기 위해서 광전(光電)식의 사운드헤드(sound-head)와 전하결합소자(charge-coupled device)를 갖춘 음성기록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 기기는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등이 있다.

● 제9007 다양한 기기 ●

영화용 촬영기	8mm필름 촬영기	8mm필름 촬영기
		
필름 영사기	16mm필름 영사기	가정용 영사기
		

○ 제9007 소호의 구성

제9007 소호 체계는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소그룹을 중심으로 각각 5단위에 특정 소호로 세분화했으며, 제90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6단위 소호로 각각 세분화한 총 4개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9007.10 - 영화용 촬영기
- 제9007.20 - 영사기
- 제9007.91 - 영화용 촬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07.92 - 영사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07호 HSK의 구성
소호의 용어를 그대로 준용해 세분화하지 않았다.

II. 관련 규정

○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7부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a)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나 제9007호)

○ 제8519호의 용어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제8525호의 용어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 제8528호의 용어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9011호의 용어 및 해설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A)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현미경 : 이들 현미경은 시료의 육안관찰 외에 확대된 영상(image)의 사진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이나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용 촬영기를 간단한 부착물(attachment)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 제90류 주 제2호(부분품 분류 규정)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제9007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영화용의 사진기를 포함한다) : 촬영기의 원리는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나 특히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B) 영화용 촬영기 : 동일 필름에 영상(image)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것

(C) 영사기 : 영화의 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 영사용의 정지형이나 휴대형의 기기이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영사기는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투영기는 일반적으로 몰타 십자(Maltese cross)장치로 구성되는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구에 의하여 필름을 그 촬영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간헐적으로 광학장치를 통과되도록 인출시켜, 필름이 영상 창을 통하여 이동될 때에 광원이 차단된다. 영사기의 광원으로는 보통 전기식 아아크(arc) 램프를 사용하나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영사기는 필름을 되감는 장치와 팬(fan)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어떤 투영기는 냉각수에 의한 냉각기구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영화용 촬영기 등은 산업용 필름을 사용하는지,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특수형의 촬영기 등도 포함한다

III. 주요 쟁점사항

○ 제9007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결합해 제시되는 기계들의 분류는?
- ② 제9007호의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와 제8528호의 프로젝터(projector)의 구분 기준은?
- ③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구분 기준은?
- ④ 제9007호의 주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시 주의할 점은?
- ⑤ 제9007호와 결합되는 그 밖의 세번과 물품은?

①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결합해 제시되는 기계들의 분류는?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나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특정기계와 결합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영화용 촬영기를 장착한 ‘기계식의 조정가능한 바퀴달린 플랫폼’은 제8428호로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분류해야 하는지, 제9007호(또는 제8525호)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이 결합돼 있는지와 상관없이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 분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다기능기계분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영화용 촬영기는 플랫폼이나 대차에 장착해 사용되나 필요에 따라 결합하는 것이며 영구적인 결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돼 있지 않은 집합체는 복합다기능기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상호 장착돼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을 각각 분리해 제9007호(또는 제8525호)와 제8428호로 각각 분류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영화용 촬영기를 장착한 ‘영화나 텔레비전 촬영용의 플랫폼과 조절용 암[돌리(dolly)]를 갖춘 차량(트럭)’도 잠정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제9007호(또는 제8525호)와 제8705호로 각각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만 영구적으로 결합돼 있다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705호로 함께 분류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디지털카메라 또는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장착된 촬영용 드론의 경우 제8806호(무인기)에 분류한다. 이 경우도 잠정적인 성격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 해당 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영구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제8806호(무인기)로 분류한다. 영화용 촬영기나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나 인공위성, 우주선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 제9007호의 영사기(Cinematographic projectors)와 제8528호의 프로젝터(projector)의 구분 기준은?

제9007호 해설서에 영사기에 대해 “영사기는 동일한 필름에서 영상과 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하며 광원·반사경·집광 렌즈·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몰타 십자(Maltese cross)장치에 의하여 필름을 그 촬영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인출시키며 필름을 되감는 장치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반면 제8528호 해설서에 프로젝터(projector)에 대해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두 기기 모두 투영(projector)을 목적으로 사용하나 제9007호의 영사기는 필름상의 영상을 광학장치 등을 통해 투영하며, 제8528호의 프로젝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 형태의 전기적신호로 저장된 영상을 광학장치 등을 통해 투영한다.

참고로 제9008호에도 '영화용을 제외한 투영기(image projector)'를 규정하고 있다. 제9008호에 분류되는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말한다.

③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구분 기준은?

제8525호의 용어에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제8525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반면 제9007호 해설서에는 "영화용 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는 촬영 원리는 사진기와 유사하나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 필름에 영상(image)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것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요약 정리하자면,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광학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는 영상과 음성을 광학적으로 필름에 저장하는 반면 제8525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영상과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 형태로 반도체저장매체 등에 저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④ 제9007호의 주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시 주의할 점은?

제9006호(영화용을 제외한 필름 사진기)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사진기 몸체(body), 주름통(bellow), 볼식 마운팅 헤드나 소켓식 마운팅 헤드, 셔터와 조리개, 셔터 릴리즈, 건판용 매거진이나 필름용의 매거진, 렌즈 후드, 사진기가 부착된 법정 사진촬영용 특수 스탠드나 받침대 등'이 있다.

제9007호 또한 제9006호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07호로 분류한다. 이 외에도 '모터의 잡음 제거용 케이싱[소음차단기(blimp)](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은 제외하여 제5911호에 분류한다), 휴대용 영사기의 케이싱으로서 영사용 스탠드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 다층 필름회전 스펀지(영사기에 필름을 공급하고 되감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다)'도 포함된다.

⑤ 제9007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세번과 물품은?

제9011호의 용어에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광학현미경은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돼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이나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용 촬영기를 간단한 부착물(attachment)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은 제9011호의 용어에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광학현미경과 마이크로 영사용 광학현미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호의 용어)에 따라 제9011호로 분류한다.

일시적으로 고정돼 제시됐거나 분리된 상태로 같이 제시된 것은 기능단위기계 규정(제90류 주 제3호)이나 통칙 제2호(미조립)를 적용해 제9011호로 분류한다.

마이크로 영화용 촬영기나 마이크로 영사기만 별도로 제시된 것은 당연히 제90류 주 제2호(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규정) 가목에 따라 제9007호로 분류된다.

제9007.9 소호에는 부분품 외에 부속품도 규정하고 있다. 영화용 촬영기 또는 영사기와 같이 제시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는 통칙 제3호 나목과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07.10 소호(촬영기)나 제9007.20 소호(영사기)에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9007호에서 규정한 부속품임이 명백할지라도 제9620호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9007호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용의 촬영기와 영사기도 분류된다. 그러나 완구용 촬영기와 완구용 영사기는 이 호에서 제외해 제9503호로 분류한다.

※ 본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김승미 | 중앙관세분석소

옷을 만드는 원단은 직조 형태에 따라 직물, 편물 등이 있다. 직물은 실과 실을 교차시켜 짠 것이며, 편물은 직물과는 대립되는 단어로 젓가락형이나 갈고리형 뜨개바늘을 써서 한가닥의 실을 한 개씩 코를 걸어서 짜나가는 뜨개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관세율표 제11부에서는 방직용 섬유와 이를 가공해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섬유의 종류는 견사, 면사, 양모사, 인조섬유의 사(絲) 등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특히 인조섬유는 사를 조성하는 섬유의 길이에 따라 장섬유인 필라멘트사와 단섬유인 스테이플사로 구분할 수 있다.

표백, 날염, 염색 등은 색을 입히는 방법에 따른 용어이며, 탄성사와 텍스처드사는 사의 특정 물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을 짓는 예이다. 이처럼,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군은 용어, 종류가 복잡하고, 세율구조도 다양하므로 섬유의 종류부터 최종제품까지 관련 용어 및 제조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며, 관련 부·류의 주, 호 용어, 해설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100%인 흑색계 직물로 제 5407.61-2000호로 신고됐다.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작한 직물(제11부의 총설(I)(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을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5402호 해설서에서 텍스처드사를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물리적 공정[예 : 꼬기(twisting)·꼬인 것 풀기(untwisting)·가짜 꼬기(假然 : false-twisting)·압축·주름가공·열고정(熱固定)·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주름(crimp)·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퍼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 타이츠(tights)·호스·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100%로 직조한 흑색계 직물로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이며, 단일한 색상으로 된 염색한 직물이므로 제5407.52-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 품명	신고 세번(세율)	회보 품명	정정 세번(세율)
OTHER	5407.69-2000 (FCN1 8%)	Woven fabric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dyed	5407.52-0000 (FCN1 8%)

어린이 바닥 매트 자주 교체해야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투명 씌움)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 외 플라스틱 가공을 용이하게 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폴리염화비닐(PVC)을 비롯해 플라스틱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로 그동안 널리 쓰여 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오래 사용한 바닥 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구매 제품의 경우 조사 대상 6개 중 1개에서, 3년 이상인 제품은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될 경우 제품 내부의 폴리염화비닐 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노후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율표에서 매트는 일반적으로 제9404호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분류된다.

그러나 단일 재질로 구성된 매트는 성분별로 분류된다(예 : 조물재 4601호, 고무재 4016호, 인조 모피재 4303호 등).



최신 개정 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 요령」 제정

공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훈령

-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 시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7호, 2022.5.19.)

◇ 제정 이유 ◇

□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이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검역본부는 해당년도 수출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에 등록 목록 통보

나. 재배지검역

- 우려병해충 발생 확인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 실시

다. 화물의 포장 및 보관

-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및 원산지명, 포장일자 기재
- 선별 및 포장 완료 후 1~2℃에서 냉장 보관

라.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수출화물 2% 샘플 검역, 병해충 미 발견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APPQ”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 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 검출이 없는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APQA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봉지씌우기 이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

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증명(또는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원산지명 및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1~2℃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APPQ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 검역결과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제14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한국산 사과 및 배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우려병해충(제5조 관련)

- 1.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 2. *Halyomorpha halys* 쇠뿔나무노린재
- 3. *Hyphantria cunea* 미국흰불나방

- 4. *Spodoptera litura* 담배거세미나방
- 5. *Erwinia amylovora* 과수화상병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8호, 2022.5.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정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

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캄보디아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를 정함.

- 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함.
-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 적절한 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도록 함.
- 3)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수출자 등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 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 : www.custra.com 참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9호, 2022.5.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3월 14일에 변경에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하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

-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급한 것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상용전품을 포함시킴.

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반영함.

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다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최대 20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계약당사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등 반영

- 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체화함.
-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90일로 함.
- 3)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마. 수입신고수리 전 사전 심사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 : www.custra.com 참조

훈 령

■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656호, 2022.5.23.)

◇ 제정 이유 ◇

□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훈령을 제정함

◇ 주요 내용 ◇

- 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요건을 제정함(안 제2조)
- 나.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기능을 제정함(안 제3조)

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구성 등을 제정함(안 제4조)

◇ 참고사항 ◇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본문 :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단 신

관세청

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정책 연수회 개최

관세청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등 중앙아시아 6개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정책 연수회는 인적교류 활성화로 지역별로 특화된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세계 공급망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세관당국들과 상호통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관세청 고위급과 양자면담을 통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협의,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등 각 국가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천세관

‘관세사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인천세관은 5월 18일과 20일, 양일간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정책설명회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5월 3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서울세관

서울지방우정청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위한 MOU 체결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은 ‘국제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양 기관이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 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 교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마약류 밀수 단속 등이다.

광주세관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 해상밀수 대응훈련 실시

광주세관은 해상밀수 단속을 위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목포, 군산, 제주, 완도, 광양, 여수세관 등 6개 세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담배 85만갑(시가 36억원)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으며,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던지기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진 후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이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관세무역정보』는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물류에 관한 모든 주제의 원고를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지의 구성이나 편집 방향에 관한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고 보내실 곳 know@kctdi.or.kr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 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 화 : 02-3416-512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빠른 정보 바른 정보

주간 관세무역정보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유광수

총괄 이재석 guro4609@kctdi.or.kr

편집기획 정왕국 kingdom@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이승훈 lsh0910@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마케팅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2년 5월 30일(통권 제1988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정보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에 실린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무역 실무 백과사전

2022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온라인 구매 **10% 할인!**

~~120,000원~~ → 108,0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2022.3.21. 발간
상하권 전 4,940p. 상당

- Point ①** 2022년도 제7차 HSK 전체개정 반영
- Point ②** 신규 발효 FTA(인도네시아, 이스라엘, RCEP)·WTO 등 주요 무역협정세율 수록
- Point ③** 통합공고, 세관장 고시, 수출입 관계법령 수록

도서구매문의 Tel : (02) 3416-5112 / Fax : (02) 3442-2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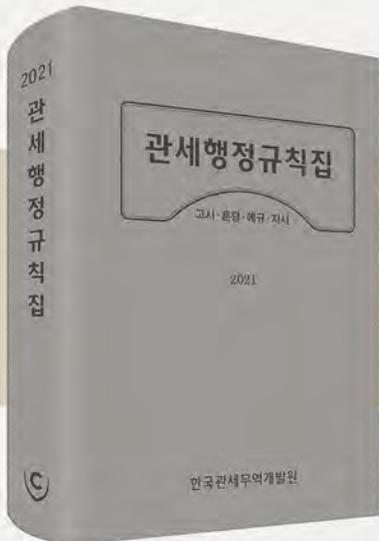
온라인구매처 커스트라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무역 전문가의 필수도서

「관세행정규칙집」 전면개정 증보판



온라인 구매 **10% 할인!**

~~145,000원~~ → 130,5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모든 관세행정규칙을 한 권에 모은 관세행정실무의 지침서.
오직 책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최신 관세청 고시·훈령·예규·지시는 물론
현재 시행 중인 관세행정규칙 총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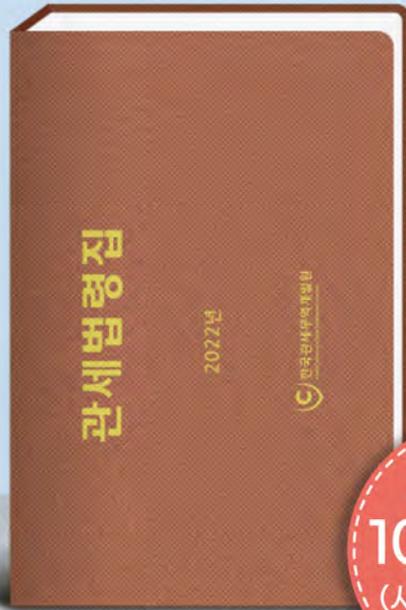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위음 | 양장 4,003p.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2 관세법령집

사전 예약 판매(22년 6월 20일 발간 예정)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행정법의 공통 메뉴얼

★ 구매 문의 : 02) 3416 - 5112 ★

최신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2년 4월 11일 기준 수록



개정 이유 업데이트

22년 시행법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 수록



가독성 높은 구성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비교 형식 배치

모든 법령을 연결하는 [행정기본법] 과 그 절차를 담은 [행정절차법]을 추가
관세행정업무는 이 한 권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9 772799 725006
ISSN 2799-7251